

第118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2號
本會議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2年2月22日(金) 11時00分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서울特別市鐘路區生活體育振興支援條例(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雇傭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鐘路區障礙人等便宜施設設置促進基金管理條例(案)
5.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7.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8. 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 및 事業計劃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9. 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10. 都市計劃(案)變更決定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生活體育振興支援條例(案)(李東奎議員 外 6人 發議)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雇傭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障礙人等便宜施設設置促進基金管理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面
7.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8. 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 및 事業計劃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2面
9. 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2面
10. 都市計劃(案)變更決定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2面

(11時00分 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開議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
 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生活體育振興支援條例

(案)(李東奎議員 外 6人 發議)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雇傭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鐘路區障礙人等便宜施設設置促進基金管理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5.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6.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

(案)(鐘路區廳長 提出)

7.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

(案)(鐘路區廳長 提出)

8. 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및事業計劃決定

(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9. 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案)에 대한 意見

聽取의 件

10. 都市計劃(案)變更決定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11時05分)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生活體育振興支援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雇傭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路區障礙人等便宜施設設置促進基金管理條例(案),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6항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7항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8항 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및事業計劃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의사일정 제9항 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의사일정 제10항 都市計劃(案)變更決定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市民行政委員會 洪起瑞 幹事!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會 幹事 洪起瑞 市民行政委員會 幹事 洪起瑞議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서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또 아울러 盧張鐸 구청장 권한대행과 1,400여 종로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 도모와 함께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 단체 조직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종로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토록 하며, (안) 제3조에서는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나라도 경제발전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증진을 위한 등산, 조기축구 등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체육인구의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진흥 도모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과 전체 구민의 약 40%가 생활체육을 생활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 시점에서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권장하고 육성·지원할 수 있는 우리 종로구 자체 실천계획의 하나인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지도원의 정년을 일반직 및 기능직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함으로써 직종간 위화감 해소 및 형평성을 유지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 동결에 따른 부족인력에 대한 대체인력 수요충족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단속업무 등의 행정기능 유지를 위하

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별표 1에서 지방고용직 공무원 1종 지도원의 정년을 53세에서 57세로 연장하고, 부칙에서 개정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방법원들에게 정년연장을 해주었을 경우에는 IMF 이후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경비절약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대교체, 인력감축을 위한 노력 등과 역행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반면에 공무원 직종간 위화감 해소와 형평성이 유지되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으며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위치 상실로 인한 어려움을 방지하여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외에 현재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들의 정원 동결에 따른 부족인력을 대체하여 각종 단속업무 등에 투입 종사케 함으로써 정상적인 행정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3월 28일 수도법이 개정되어 중수도 관련 업무 중 일부가 자치구 고유업무로 변경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담당부서(국)를 지정하고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 제2항 중 제33호에 중수도 관리, 저수조 위생지도·감독 및 청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3월 28일 수도법 개정으로 자치구의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동년 9월 29일부터 시행토록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생활복지국에 변경 신설된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우선 국 단위 사무가 규정되어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담당 과 분장을 위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자치구의 고유업무로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법 제4조의3 제2항제3호의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 물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과 제11조제1항의 중수도 설치결과 관리, 제21조의 급수장치(저수조)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도·감독, 제21조의2 규정의 저수조 청소업의 신고 등 업무로서 수돗물의 위생관리·지도·감독이 주 내용이므로 생활복지국의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로 분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종로구 관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기금 설치 사유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금 조성 재원으로서는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종로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용도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용자·보조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주요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이외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고, 그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으로 종로구 관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면서 그 기금으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용자·보조하는 외에 장애인 등이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기금의 설치조건인 공익상 필요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되며 또한 이분들에게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면서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폭우·폭설 등 기상변화와 명절 연휴 또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부도 등으로 쓰레기 적체 상태 발생시 이의 효율적 처리 방법으로 자치구 상호간 또는 대행업체 상호간 청소인력 및 장비를 상호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의2에서는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 요청 및 협력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9조 제2항의 제8호에서는 폐기물 등의 처리대행 계약사항에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업체간, 대행업체 상호간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도심에서의 쓰레기 장기적체 상태에 대비하고자 자치구 상호간 또는 자치구와 민간대행업체간 그리고 대행업체 상호간 청소인력 및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쓰레기 처리에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 자치구의 관련 조례에 반영, 법제화하는 것으로서 이는 폭우·폭설 등의 자연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이나 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언제 어느 때고 일어날 수 있고 또한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장기적체 상태에 적극 대처하고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시로서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이들 관련법을 근거로 하여 쓰레기 처리상의 문제 발생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의 하나로 민·관이 상호 협력 및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生活體育振興支援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雇傭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

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

(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障礙人等便宜施設設置促進基金

管理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

(案) 審査報告書

(市民行政委員會)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洪起瑞 市民行政委員會 幹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財務建設委員會 安載弘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建設委員長 安載弘 財務建設委員會 委員長 安載弘 議員입니다. 이번 재무건설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행정정보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14일자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서도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처리민원에 대한 수입증지 영수처리요령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의3의 규정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제4조, 제5조의 용어 중 '계기'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무인

민원발급기는 24시간 활용이 가능하고 대상민원도 현재는 12종이지만 향후 호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병적증명, 납세관련 증명 등 14개 종목에 대하여도 확대시행계획으로 있어 민원행정서비스를 창구 중심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전달체제로 전환이 됨으로써 대민서비스 측면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등록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은 과세표준액이 아닌 산출세액을 50% 경감하도록 하고 있어서 재산세인 경우는 상관없으나 종합토지세인 경우는 과세표준액의 합산제와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누진을 적용으로 세액 산출에 불합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세액 50% 경감규정을 과세표준액 50% 경감규정으로 개정코자 하며 임대주택 감면조항인 조례 제8조에 규정된 본 규정을 지정문화재 감면규정인 제7조로 이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과세의 공평성을 기한다는 자구를 추가하였으며, 제8조제2항은 삭제하고 이를 제7조제2항으로 이기 시행하면서 그 내용 중 '세액 50%' 경감 자구를 '과세표준액 50%' 경감 자구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종합토지세 감면액의 부적절 요인을 제거하는 보완적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제6구역은 청계로변에 위치한 창신동 400-4번지 일대 1만 6,464.7㎡로서 청계로변의 삼일아파트 6개 동과 후면부의 일반상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구역은 1984년 11월 17일 건설부고시 제469호로 재개발구역 지정되었으나 삼일아파트와 상가지역간의 상이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 추진의사가 미진한 후면부를 구역에서 해제하고 삼일아파트가 위치한 부분만 사업추진코자 하는 사항

으로서 재개발구역 면적이 현재 1만 6,464.7㎡에서 6,060.3㎡로 축소되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의 재개발사업계획안을 보면 현재의 아파트 6개 동을 철거하고 18층 아파트 3개 동 210세대 규모로 건립하고 20층 오피스텔 1개 동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관련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주민의 입장에 서서 열과 성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인제3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1984년 11월 17일 건설부고시 제469호로 재개발구역 지정된 이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1996년 6월 29일 서울시고시 제173호로 삼일아파트 7동부터 12동이 위치한 지역이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해제결정 고시 후 2년 이내에 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1998년 6월 29일자로 해제 내용이 실효되고 재개발구역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실효처분의 원상 회복적 조치로 이 구역을 재개발구역에서 다시 해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총 구역면적은 2만 4,087㎡이고 해제하는 부분은 삼일아파트 7동부터 12동 일대 4,810.3㎡로서 잔여재개발구역 면적은 1만 9,276.7㎡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이 지역은 대부분 국공유지가 산재한 지역으로 주민의 자력개발 의지가 높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해제민원이 이어지고 있어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평창동 148번지 16호 일대 자동차정류장부지 7,736㎡ 중 6,949㎡를 해제하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대한 건입니다. 본 지역은 1979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78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이 부지를 사용하여 오던 유성운수에서 별도의 차고지를 상암동에 확보함으로써 자동차정류장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로 사유지인 본 도시계획시설의 소유자들이 지속적으로 해제민원을 제기하여 온 지역이고 당초 부지인 7,736㎡를 자동차정류장에서 해제하는 계획을 입안하여 2001년 6월 13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7월 28일 서울시에 해제 결정 요청한 바 있으나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도원교통의 매입의견과 차고지 용도가 불필요하여 해제하는 경우 공공기여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반려된 사항으로 이에 따라 도원교통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일부토지인 148번지 7호의 664㎡에 대하여 임대사용 또는 토지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이 부분만 자동차정류장으로 존치하고자 하며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타 공공시설로의 활용계획이 없어 자동차정류장에서 해제하는 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제부분 6,949㎡에 대한 향후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말씀드리면 해당부지 중 평창동 148번지 9호 일대 880㎡는 현재 자연경관지구로서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지침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별 구분하고 평창동 148번지 16호 일대는 현재 18m 최고고도지구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사유토지주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및事業計劃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都市計劃(案)變更決定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財務建設委員會)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安載弘 財務建設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生活體育振興支援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雇傭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路區障痾人等便宜施設設置促進基金管理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회 간사가 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및事業計劃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都市計劃(案)變更決定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時35分 閉會)

○出席議員 18人

金以煥 鄭泰淳 李憲九 吳錦南
千相旭 玄壽漢 安載弘 丁炳煥

劉燦鍾 李炯述 洪承台 金福同
朴鍾植 吳弼根 洪起瑞 李東奎
金正大 宣相善

○出席關係公務員

區廳長 權限代行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務局長 董浩洙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都市管理局長 河撤昇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保健所長 鄭有珍

1. The first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ccurate records of all transactions. It emphasizes that proper record-keeping is essential for the integrity of the financial system and for the ability to detect and prevent fraud. The text notes that without reliable records, it would be difficult to track the flow of funds and identify any irregularities.

2. The second part of the document outlines the various methods used to collect and analyze data. It describes how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are gathered from various sources and how this data is then processed to identify trends and patterns. The text highlights the need for consistent and standardized data collection procedures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3. The third part of the document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It discusses the various statistical techniques and models used to interpret the data and draw meaningful conclusions. The text notes that the analysis should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factors and that the results should be presented in a clear and concise manner.

4. The four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It notes tha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used to identify areas for improvement and to develop strategies to address any identified issues. The text emphasizes that the findings should be used to inform decision-making and to guide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procedures.

5. The fif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process. It notes that there are many factors that can affect the quality of the data and the accuracy of the analysis. These factors include the reliability of the data sources, the consistency of the data collection procedures, and the complexity of the data itself.

6. The six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future of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process. It notes that there are many new technologies and methods being developed that will improve the efficiency and accuracy of the process. The text emphasizes that it is important to stay up-to-date on the latest developments in the field and to incorporate new technologies and methods as they become available.

7. The seven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process. It notes tha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uld be made available to all stakeholders and that the process should be subject to regular review and audit. The text emphasizes tha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re essential for the integrity of the financial system and for the ability to detect and prevent fraud.

8. The eigh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role of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process in the overall financial system. It notes that the process i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system and that it provides the information needed to make informed decisions and to manage the system effectively. The text emphasizes that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process is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the financial system.

9. The nin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in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process. It notes that the process is a complex one that requires the input and expertise of many different people. The text emphasizes that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are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the process and for the ability to identify and address any issues.

10. The ten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ongo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process. It notes that the process is not a one-time event and that it needs to be monitored and evaluated regularly to ensure that it is still effective and efficient. The text emphasizes that ongo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are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the process and for the ability to identify and address any issues.